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급증하는 세원 및 세입규모에 적합한 조직운영을 위해 세무과 분과를 통한 세정 서비스 향상과 전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
- 「제101회 전국체전」의 준비와 예산확보, 행사기획, 시설확충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며
-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중복·쇠퇴 기능을 축소 및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중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부서 신설 및 폐지(안 제7조)
 - 가. 세무과 폐지 및 세정과, 징수과 신설
 - 나. 전국체전추진단 신설(한시기구)
- 분장사무 신설
 - 가. 경제통상국 분장사무 신설(안 제5조)

- 탄소산업 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신설
 - 지역공동체사업의 총괄·기획 및 활성화를 위한 분장사무 신설
- 나. 정책기획실 분장사무 신설(안 제6조)
- 지역인구정책 기획·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세원·세입 증가에 따른 세정 전문성·효율성 제고 및 세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, 전국체전추진단(한시기구)을 신설하여 2020년 『제101회 전국체전』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하며,
-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경제통상국 및 정책기획실의 분장사무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중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